

1. 환경관련 법령

가. 환경정책기본법

법	문	시	행	정
제 2 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 1 절 환경 기준	제 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제 25조 【환경기준】 법 제 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신설 2002.12.30] 제 25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 7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①법 제 25조제 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법	룰	시	행	령
<p>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p>		<p>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개정 2005.1.31></p> <p>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p> <p>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개정 2005.1.31></p> <p>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p> <p>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p> <p>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다.</p> <p>③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법	시	행	령
	<p>④ 환경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3.6.30]</p> <p>제8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의 구비서류】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지로부터 제출받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개정 2005.1.31> <p>가.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p> <p>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p>		



법	률	시행령
<p>③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2.12.30]</p>	<p>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축 및 저감대책</p> <p>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p> <p>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p> <p>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p> <p>②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31></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03.6.30]</p>	<p>제9조 【협의의건의 통보】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이하 “협의의건”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의건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03.6.30]</p>



법	행	령
<p>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2.12.30]</p>	<p>제1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④ 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3.6.30]</p>	
<p>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2.12.30]</p> <p>제28조 【환경영향평가】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2.12.30]</p>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제7조제1항 본문관련)

1. 행정계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정 계획 (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환경보전계획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현을 위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구역 지정전 계획 확정전 지구 지정전 또는 계획 수립시 계획 수립시
나.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2) 중소기업진흥촉진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단지 지정전 계획 승인전
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시행자 지정 또는 계획 승인전 계획 승인전

2. 개발사업

구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상한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상한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사업의 허가전 사업의 허가전

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지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2) 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승인전 계획 수립시 예정지 지정전
마. 골재채취	(1) 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예정지 지정전
바. 대형건설공사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사업을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한다) 계획 (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건설공사 계획 <개정 2004.12.1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에 의한 타당성조사서의 적정성 검토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 선정시



<p>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p>	<p>(1)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시설 사업의 허가권 지린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광양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피지역 1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아. 수질환경보전법 용지역</p>	<p>(1)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1)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업</p>

비고 : 1.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협의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제2호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망사업법에 의한 사망사업 및 농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대상에서 제외한다.

<p>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수호보전법 적용지역</p>	<p>(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3)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4)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5) 조수보호및수질개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산림법 적용지역</p>	<p>(1)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p>	<p>(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p>	<p>(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3) 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편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면적

6.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결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가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3. 제2호가목의 지역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의2. 제2호가목의 지역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05.1.31>

4. 제2호가목은 산림법 제18조·제90조·제90조의2 또는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임목벌채 등의 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나 산림법에 의한 허가(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을 제외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제2호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뺄용도지역뺀이라 한다)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결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가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때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



나. 환경·교통·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	시	시
총 칙	행 령	행 규 칙
<p>제1장 총 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교통·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교통·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협의기준조과부담금납부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령)</p>
<p>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5. 도로의 건설</p>		
<p>제2장 평가서의 작성 등</p> <p>제5조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법	시	시행령	시행규칙
<p>제6조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 5.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환경영향평기본안에 한한다.) 		



법	시 시 시	시 시 시
	<p>6.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시·도지사,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p> <p>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의 실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에 관한 서류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항평가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p>	<p>제2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환경·교통·제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p>



법	시	시	행	규	칙
	<p>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p>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6.29></p> <p>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 개정 2004.6.29></p> <p>⑥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들은</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p> <p>①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들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과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신설 2003.12.3, 개정 2004.6.29></p>	
	<p>제7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p> <p>①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조 【설명회의 개최】 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서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 2004.6.29></p> <p>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개정 2004.6.29></p> <p>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p>	



법	시	시	행	규	칙
	<p>제9조 【공청회의 개최】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장소 및 공청회의 주제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③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개정 2003.12.3>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 2004.6.29></p> <p>제10조 【주민의견수렴지역의 확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p>②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3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와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19></p>



법	시	시	시
시	행	행	규
척	척	척	척
<p>제6조의2 【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 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0></p>			
<p>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①사업자는 평가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p>			
<p>제3장 평가서의 협의 등 제17조 【평가서의 협의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법	시	시행규칙
<p>제18조 【평가서의 보완】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 【평가서의 보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보완사유는 현행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대책의 부적절 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p>	
<p>제19조 【평가서의 검토 등】 ①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분야별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통합검토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16조 【전문가의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라 함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말한다.</p> <p>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의 건설 2.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3. 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시	시	시
<p>제20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과 제1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0조 【평가서 협의기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이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협의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협의기간을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은 협의기관장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내용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회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29></p> <p>④ 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의 영향평가업무 담당하나는 과장과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4.6.29></p> <p>⑤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20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과 제1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	시	시	시
행	행	행	행
규	규	규	규
칙	칙	칙	칙
<p>제21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2조 【이의신청】 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2조 【이의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p>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p>		



법	시	시	시
<p>제23조 【평가서의 제협의 등】 ①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시행령</p> <p>제23조 【제협의】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p> <p>②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협의된 내용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최소 영향 평가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의 부지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p> <p>2.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p>	<p>시행규칙</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제5조 내지 제7조,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작성 및 제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3.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본에 한한다.)</p> <p>4.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본에 한한다)</p> <p>③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무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① 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p>	<p>제24조 【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등】 ①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 승인기관장등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항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항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항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p>	<p>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항저감방안을 작성할 때에 분리게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신설 2004.6.29></p> <p>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를 제외한다)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및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도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이 부과·징수되는 시점(이하 "부과대상시점"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5.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03.12.3>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5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신설 2003.12.3></p>	<p>제13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후 1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환경영향평가분야에 있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5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p> <p><개정 2003.12.19></p>		



법	시	시	행	규	칙
<p>④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내용의 이행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조 【환경영향 조사결과와 통보 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결과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결과와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8> (환경부령)</p> <p>제3조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환경부령)</p>



법	시	시	행	규	칙
<p>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 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p>		<p>제4조 【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 ①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항목중 다음 각호의 항목을 말한다.(환경부령)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시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 <개정 2003.12.19> ②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부령)</p>			
<p>①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p>		<p>제16조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p>			
<p>제25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p>	<p>제25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 관리 결과를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해 1월31일까지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준공 및 공사중지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제2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8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사업자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③평가서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p> <p>제29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p> <p>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시 행 령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법</p> <p>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중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p> <p>④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는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p> <p>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평가항목·범위가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안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3.12.30></p> <p>⑥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3.12.30></p> <p>⑦ 승인기관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0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①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3.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p>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p>		
<p>제32조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p> <p>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요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6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p>	



시	행	규	칙
<p>④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p> <p>행</p> <p>령</p> <p>제27조 【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2.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p>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p> <p>③재평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유발한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시·도지사는 매년 교통체증지역 또는 병목지점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⑥그 밖의 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3.12.3, 2004.1.29, 2004.6.29>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1. 환경영향평가분야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 사업 (가) 4km 이상의 신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에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3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2차로 이상으로서 10km 이상의 확장 (다)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의 길이(합) 구간 길이의 합 ----- + ----- 4km 10k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규칙

[별표 1] <개정 2003.12.19>

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3조관련)

조사대상사업	조사기간
2.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 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다음 사업 (4) 영 별표 1 제1호 마. 도로의 건 설의 사업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 료후 3년까지. 다만, (2) 의 경우에는 사업착공시 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조 사를 실시하고, 공사완 료 후에는 입주율이 70% 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3 년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후 7 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를 이 70%에 도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다.

비고)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시 환경영향조사기간을 조정할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조사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 기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과 협의하여 위 표의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 12.29 법5094, 97.8.28, 99.4.15></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p> <p>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p>	<p>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개정 2003.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p>제61조(비산먼지발생사업)영 제38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5의 사업을 말한다.</p> <p>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0></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p> <p>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개정 2003.12.10></p> <p>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2.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p>



법	시	시	행	규	칙
		<p>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p> <p>⑤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물물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6. 삭제 <99.10.22> <p>⑥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 규정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p>			



법	시	시 행 규 칙
	시 <td data-bbox="309 248 798 835"> <p>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p> </td>	<p>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p>



[별표 15] <개정 2003.12.10>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제61조 관련)

발생 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린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틱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중·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한다. 다만, 골경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골락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다.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발생 사업	신고대상사업
5. 건설업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판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판면적 100㎡ 이상에 한한다)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1.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6] <개정 2003.12.10>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62조제4항 관련)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p>1. 아력(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아력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는다. 아력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설물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 이상의 공사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다. 아력물질을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원아력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p>
<p>2. 신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p> <p>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경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²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p> <p>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p>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p>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모·골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p>	<p>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p> <p>나. 적재물이 적체할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체할 측면에 덮도록 적재할 것</p> <p>다. 도로가 비포장도로인 경우 비포장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반지름 1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p> <p>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p> <p>(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p> <p>금속지리지대에 설치된 물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p> <p>(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조의 깊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의 폭 : 수송차량 전장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울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p>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체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수압 : 3kg/cm² 이상 <p>바. 수송차량은 세갈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p> <p>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p> <p>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p> <p>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p>





라. 수질환경보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9.2.8, 2000.1.2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63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8.28></p> <p>⑥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p> <p>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4.2.9></p> <p>[전문개정 1995.12.29]</p>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관련)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분	대 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 ³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 ³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 (mg/ℓ)	부 유 물 질 량 (mg/ℓ)	부 유 물 질 량 (mg/ℓ)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 (mg/ℓ)	부 유 물 질 량 (mg/ℓ)	부 유 물 질 량 (mg/ℓ)
항	지역 구분								
청정 지역	환경기준(수질) 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가 지역	환경기준(수질) I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80이하
나 지역	환경기준(수질) III, IV, 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120이하
특별 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비고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2.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마. 소음진동규제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1997.3.7]</p>		<p>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p> <p><개정 2000.5.4, 2004.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상시 거주하여 생활하는 주택을 말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p>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개정 1999.7.19, 2004.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성기에 의한 소음(확성기를 이용한 상업성 홍보행사 등으로 인한 소음을 포함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p> <p>①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p>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p> <p>[전문개정 1997.3.7]</p>		<p>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p> <p>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p> <p>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p>
<p>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①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장비로서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99.1.25></p> <p>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p> <p>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p> <p>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p> <p>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착공사</p> <p>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7.19, 2004.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별표 7의2 <개정 04.1.15>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제29조의2제3항관련)

1. 생활소음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별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소음원	옥외설치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소음원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화성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옥외에서	50이하	55이하	45이하
그 밖의 지역	공장·사업장	공장·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그 밖의 지역	옥외설치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외에서	옥외에서	60이하	65이하	55이하
	화성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화성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사업장	공장·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나. 2009년 1월 1일부터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별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소음원	옥외설치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소음원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화성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옥외에서	50이하	55이하	45이하
그 밖의 지역	공장·사업장	공장·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옥외설치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외에서	옥외에서	60이하	65이하	55이하
	화성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화성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사업장	공장·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2. 생활진동규제기준

(단위 : dB(V))

시 간 별	주 간	심 야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	(06:00-22:00) 65이하	(22:00-06:00) 60이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 비고 :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바. 건설폐기물 관련법령 검토

(1)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은 페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페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구분	내용	관련근거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건폐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5조
수집·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구역의 발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건설폐기물 발생량 500톤 이상, 2007. 1. 1부터는 100톤 이상 공사) 발주시 「건폐법」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구역”을 분리하여 발주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분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건설폐기물 발생량 500톤 이상, 2007. 1. 1부터는 100톤 이상 공사) 발주시 「건설법」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p>「건설법」 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p>
적정처리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위·수탁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건설법」 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p>





(4) 배출자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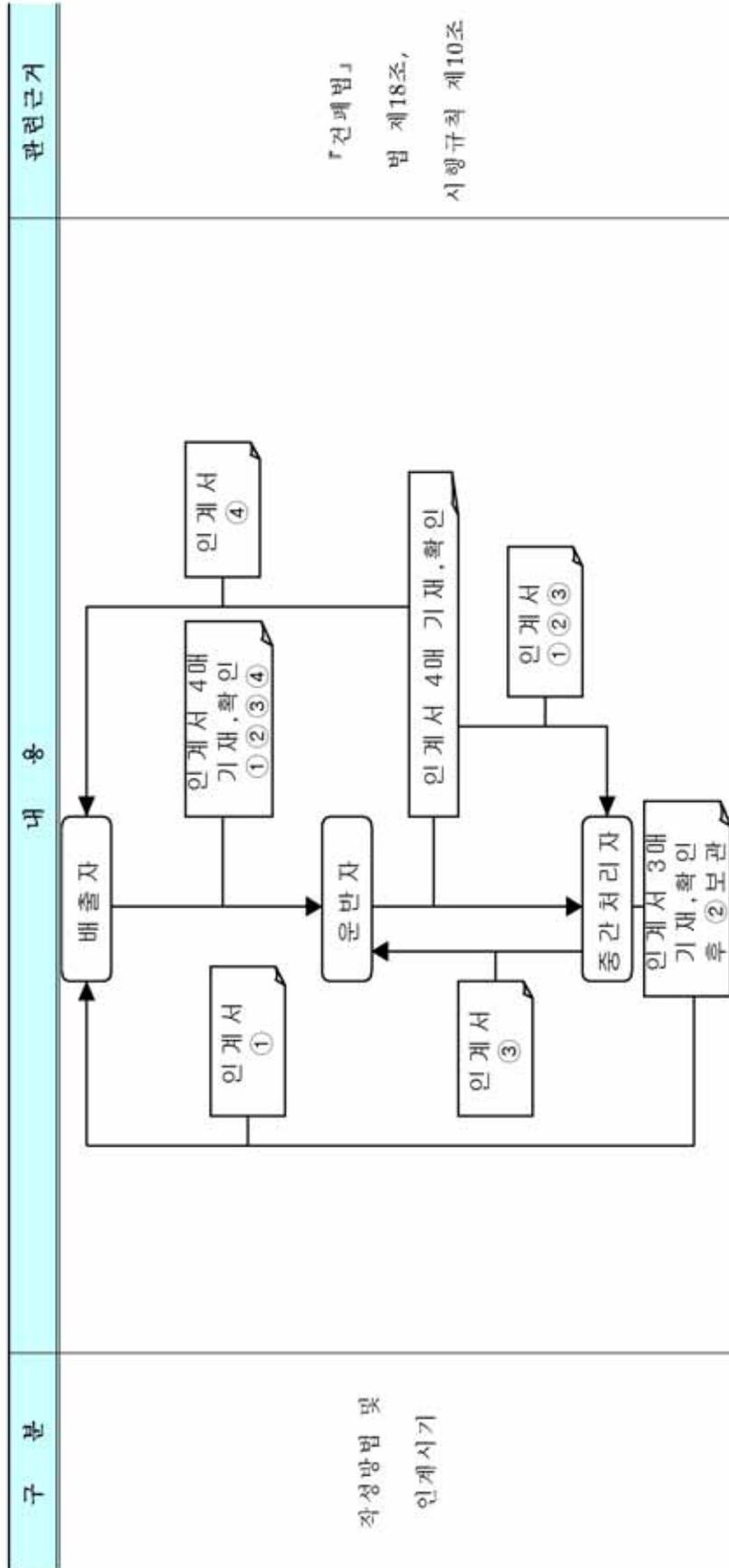
-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구분	내용	관련근거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회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폐법』
변경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5)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사용신고

-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처리시설 사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법」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0조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변경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의 변경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법」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9조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div> 	



(8)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방안

(가)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종류		비 고
1. 페콘크리트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건설폐도석 14.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법』 시행규칙 [별표1]
2. 페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7. 폐합성수지		

(나) 적정처리방안

구 분		2001. 1. 1 2004. 12. 31	2005. 1. 1 2005. 7. 18	2005. 7. 19 이후	비 고
발주자 발주자에게 대한 사항	발주자가 「국가발주사자로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폐규칙10조, 별표4)	폐기물관리법	건설폐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폐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폐법 우선 적용
	발주자에 대한 사항	발주자가 「국가발주사자로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폐규칙10조, 별표4)	「국가발주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발주자인 경우 (건설폐법15조)	「국가발주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발주자 발주자에게 대한 사항 발주자 발주자에게 대한 사항	발주자에게 대한 사항	5톤 이상 (폐규칙10조, 별표4)	500톤 이상 (건설폐법11조, 시행령부칙②)	‘06까지 500톤 이상 ‘07부터 100톤 이상 (건설폐법11조, 시행령부칙②)	



배출자	배출자 또는 원도급자 (폐규칙10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원도급자인 경우) (건설법2조)	발주자 (건설법2조)
	배출자 (발주자와 원도급자 중 배출자신고를 한자)가 스스로처리 (폐법25조)	배출자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건설법27조)	
당해현장 재방	처리주체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부피기준1%이하 (폐규칙별표4)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부피기준1%이하 (건설법27조)
	순환골재재활 용시 규		
위탁처리 방	시행주체	배출자 (발주자)	
	위탁방법	배출자인 발주자가 분리(또는 분담이행방식)발주 시행	
배출자	배출자 또는 원도급자 (폐규칙10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건설법2조8호)	
	배출자 (발주자와 원도급자 중 배출자신고를 한자)가 스스로처리 (폐법25조)	배출자 (발주자와 원도급자 중 배출자신고를 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건설법27조)	
당해현장 재방	처리주체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부피기준1%이하 (폐규칙별표4)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부피기준1%이하 (건설법27조)
	순환골재재활 용시 규		
위탁처리 방	시행주체	배출자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위탁방법	○ 배출자가 발주자인 경우 : 발주자가 위탁처리시행 ○ 배출자가 원도급자인 경우 : 원도급자가 위탁처리 시행	

※ 폐법·폐규칙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건설법·건설시행령·건설법규칙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원도급자 :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9)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질의내용	회신내용
<p>현재시행중인 도로건설현장(1~6공구, 가~바시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현장내 자가처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1~4공구는 A지 자체의 관할이고 5~6공구는 B지자체의 관할입니다.</p> <p>착공초기에 A지자체에서는 1~6공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한국도로공사로 신고자(배출자)로 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배출자신고를 필하였으며, 전 공구에 대한 파쇄는 이동식 현장 파쇄기로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p> <p>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8항에 근거하여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원도급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자인 “가”, “나”, “다”, “라”, “마”, “바”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구간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p> <p>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7조에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건설폐기물 발생량에서 제외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자가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아 현장에 임목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도급자인 “가~바”가 임목폐기물 파쇄시설을 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나,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로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p> <p>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1~6공구의 도로공사가 각 임할을 통하여 각각의 시공사들을 선정할 공사라면 1~6공구의 도로공사는 비록 발주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얻어 설치하여야 합니다.</p>



질의내용	회신내용
<p>『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는 건설현장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가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을 현장내에서의 재활용을 조건으로 배출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현장내에서 파쇄된 순환골재를 현장밖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재활용승인신고를 지자체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목폐기물을 현장에서 파쇄하여 생산된 우드칩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며 단지 임목폐기물을 현장내에서 파쇄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에게 화목용으로 공급하는 등의 목적일때는 수령하고자하는 자로 하여금 별도의 재활용 신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드칩을 현장외의 인근농가로 반출시 배출자가 재활용승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동법 제2조7항에 의하면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로 되어있데 그렇다면 임목폐기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기때문에 임목폐기물을 파쇄한 우드칩도 순환골재라 할 수 있는지요?</p>	<p>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파쇄하여 생산한 톱밥, 우드칩은 순환골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톱밥, 우드칩을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p> <p>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톱밥, 우드칩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인근 농가나 수요처에 공급 가능합니다. 제조된 톱밥, 우드칩은 외부 운반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대상이 아니며, 농가에서 다른 사람의 임목폐기물을 받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해야 합니다.</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의거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에 의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데 "임목폐기물"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질의합니다.</p>	<p>『폐기물관리법』에 임목폐기물이라는 용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종류는 일반적으로 성상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줄기, 잎 등은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p>



질의내용	회신내용
<p>3. 분리발주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위탁처리업자가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p> <p>공사추진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폐기를 적사비는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포함하고 운반 및 폐기물처리수수료만 분리하여 위탁하여도 되는지 여부?</p>	<p>『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사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영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운반·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간이인계서 원본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가 보관한다.</p>
<p>『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7월 18일까지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자 영의로 변경신고하도록 무척조항에 있는데, 발주자 영의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분리발주 대상이 기존 계약에서 분리발주 대상으로 하였던 임목폐기물만이 되는지, 아니면 법에서 언급하였던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p>	<p>『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2005.7.18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발주자가 배출자의 의무를 인계하여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배출자인 원도급자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규모 산정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하며, 현장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됩니다.</p>



질의내용	회신내용
<p>2. 2005년1월19일에 공포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조에 의하면 2005년7월19일 이후엔 분리발주 또는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 하지 아니한 현장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조 3항에 의하여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는데,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되어 공사중인 현장도 발주자와 분리발주 또는 공동분담이행방식이 아닌 원도급자와 폐기물처리를 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장내에 임야부를 벌목 후 발생한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파쇄기를 통하여 우드칩으로 생산 후 인근 축사 또는 과수원등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해 당관청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동법 제15조에 의거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된다면 우리회사의 도급수령에서 공 제 후 발주처에서 별도발주를 해야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니 별도발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p>	<p>2. 당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발주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면 동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시 분리발주를 할 필요는 없으나, 예측치 못한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폐기물 발생량이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p> <p>「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서의 배출자는 발주자를 말하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가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p> <p>아울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2005.7.18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p>
<p>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 약200톤)처리 신고를 특한 상태인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페인트, 기름, 방부제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 처리가능하다고 하는데, 1. 주변 인근 농가에 연료용 사용시 농가로 반출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건설폐기물변경계획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3. 변경계획 신청시 처리업소는 인근농가를 기재하는지?</p>	<p>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페인트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폐목재는 인근지역 농가에 연료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배출자신고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폐기물관리대장에 이를 재활용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p>



질의내용	회신내용
<p>“건설폐기물처리시설위변경승인신청서”의 신청인이 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이미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발주자로 배출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p>	<p>「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분리발주대상사업인 경우 폐기물배출자가 발주자이므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공사 신청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에는 현장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가 직접 건설폐기물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승인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고 위치만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승인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p>
<p>도로확장 공사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만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처리할 수 있는지?</p>	<p>「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임목폐기물 등 폐목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운반하여야 함.</p>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p> <p>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p> <p>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p>		<p>제13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청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할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외의 야생동·식물 보호 등</p> <p>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 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p> <p>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p>		<p>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p> <p>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p> <p>6.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당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4조(포획금지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는 별표 6과 같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절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p> <p>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준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만 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p>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p> <p>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法律 第7038號</p> <p>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대통령령 제18618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p> <p>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p>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p> <p>제7조(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번·지목 및 지적 4. 그 밖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시	시	행	규	칙
<p>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p> <p>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p> <p>-----이하생략-----</p> <p>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p> <p>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p> <p>-----이하생략-----</p> <p>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p>	<p>제8조(핵심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 제2호에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p> <p>1. 도로·철도·하천·삭도(索道)·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이하생략-----</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산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	시행령	시행규칙
	<p>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p> <p>5.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p> <p>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가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모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록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p style="text-align: right;">-----이하생략-----</p>		



자.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0.1.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칩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제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p>제15조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999.6.30></p>	<p>제18조 (허가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0.9.1></p> <p>② 법 제20조제3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칩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p> <p>③ 법 제20조제3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칩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p> <p>④ 법 제20조제4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p> <p>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p>
		<p>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등의 행위) ①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용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굴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자. 광고물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 의 야적 행위 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2003.7.14>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p> <p>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p> <p>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p> <p>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p> <p>4. 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p> <p>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전문개정 2000.9.1]</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8조의2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p> <p>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및 주위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p>	<p>제33조의2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개발 등에 의하여 이미 원형이 변경된 지역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9.6.30]</p>	<p>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행정기관이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시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2.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p>제74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p>	<p>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이내로 한다.</p>	<p>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행정기관이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시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2.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p>	<p>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p> <p>②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27></p> <p>[본조신설 2000.7.10]</p>	<p>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p> <p>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의 화에 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p> <p>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 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3.7.14]</p>
<p>제74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p>	<p>제43조의3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출 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1.6.30></p> <p>1.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p> <p>2.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본조신설 1999.6.30]</p> <p>[제43조의2에서 이동<2000.7.10>]</p>	<p>제59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43조의3제2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p> <p>나. 문화유적분포지도</p> <p>다. 문화유적원부</p> <p>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p>



시 행 규 칙	시 행 령	시 행 령	문 화 재 보 호 법
<p>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본조신설 2001.9.8]</p>			<p>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⑥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p>



2. 환경보전을 위한 입지고려지역

노선선정 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한 설정은 입지가능지역에 대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도로노선 계획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지정목적 :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지정내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환경부 고시 제90-15호, 1990. 7. 19)

o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사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 환경부 고시 제99-37호, 1999. 3. 26)

o 폐수배출시설

- 규제대상 :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1일 500m³이상의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설

- 규제내용

· 1일 500m³이상 폐수배출시설의 I 권역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II 권역에는 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o 오수배출시설

- 규제대상 : 건축연면적 800m²이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창고 및 비오수배출시설은 제외), 건축연면적 400m²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조리판매업

- 규제내용

· I 권역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건물이거나 학교, 병원, 도서관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 20ppm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 입지허용 함.



나. 수변구역

- 관련법률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정목적 : 한강수계 수질 보전
- 지정원칙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 - 충주조정지댐), 북한강(팔당댐 - 의암댐)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의 양안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
 -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 ·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
- 지정내용 (환경부 고시 제99-153호, 1999. 9. 30)
- 규제사항
 - 특별대책지역(경기도 광주·양평·가평·용인·이천·남양주·여주 일부: 양안 1km)
 - 폐수배출시설, 음식점 · 숙박시설, 목욕장,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금지
 - 특별대책지역 밖(특별대책지역 밖 수변구역 ; 양안 500m)
 - 폐수배출시설의 신규입지 금지
 - 음식점 · 숙박시설 · 목욕장은 BOD 10ppm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허용(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시장 · 군수에게 허가 위임)
 -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폐수를 공공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하는 경우로서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입지허용
 - 개발행위 유발 또는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용도지역 · 지구 지정 제한(공통) 수변구역내 행위제한(법 제5조 관련)

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관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 지정목적 :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또는 보호야생동 · 식물의 서식지 · 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의 보전
- 지정원칙 : 생태 · 자연도에 의하여 I 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 지역으로 정함.
 -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과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 동 · 식물 또는 보호야생동 · 식물의 서식지 · 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o 규제사항
 - 생태계 보전지역내 행의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자연환경보전시행령 제22조>

라. 상수원 보호구역

- o 관련법률 : 수도법 제5조
- o 지정목적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
- o 규제내용
 - 행위금지 <수도법 제5조>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수도법시행령 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수도법시행령 제9조>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수도법시행령 제9조의2>

마. 백두대간 보호법

- 관련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요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 o 지정원칙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
 - o 보호지역의 종류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 현황
 - o 고시번호 : 산림청고시 제2005-83호 (2005. 9. 9.)
 - o 백두대간보호지역
 - 명 칭 : 백두대간보호지역
 - 위 치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부터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

6개 도의 32개 시·군 :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전라북도(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구례군), 경상북도(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면 적 : 국·공·사유지 263,427ha(7,306필지)

핵심구역 : 169,950 ha,

완충구역 : 93,477 ha

□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률 제7조)

○ 핵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예외사항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철도·하천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용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4. 1~3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 완충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법률 제8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7조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함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함)

○ 산림청장은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법률 제9조)

○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음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법률 제11조)

○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위원회 심의사항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조정 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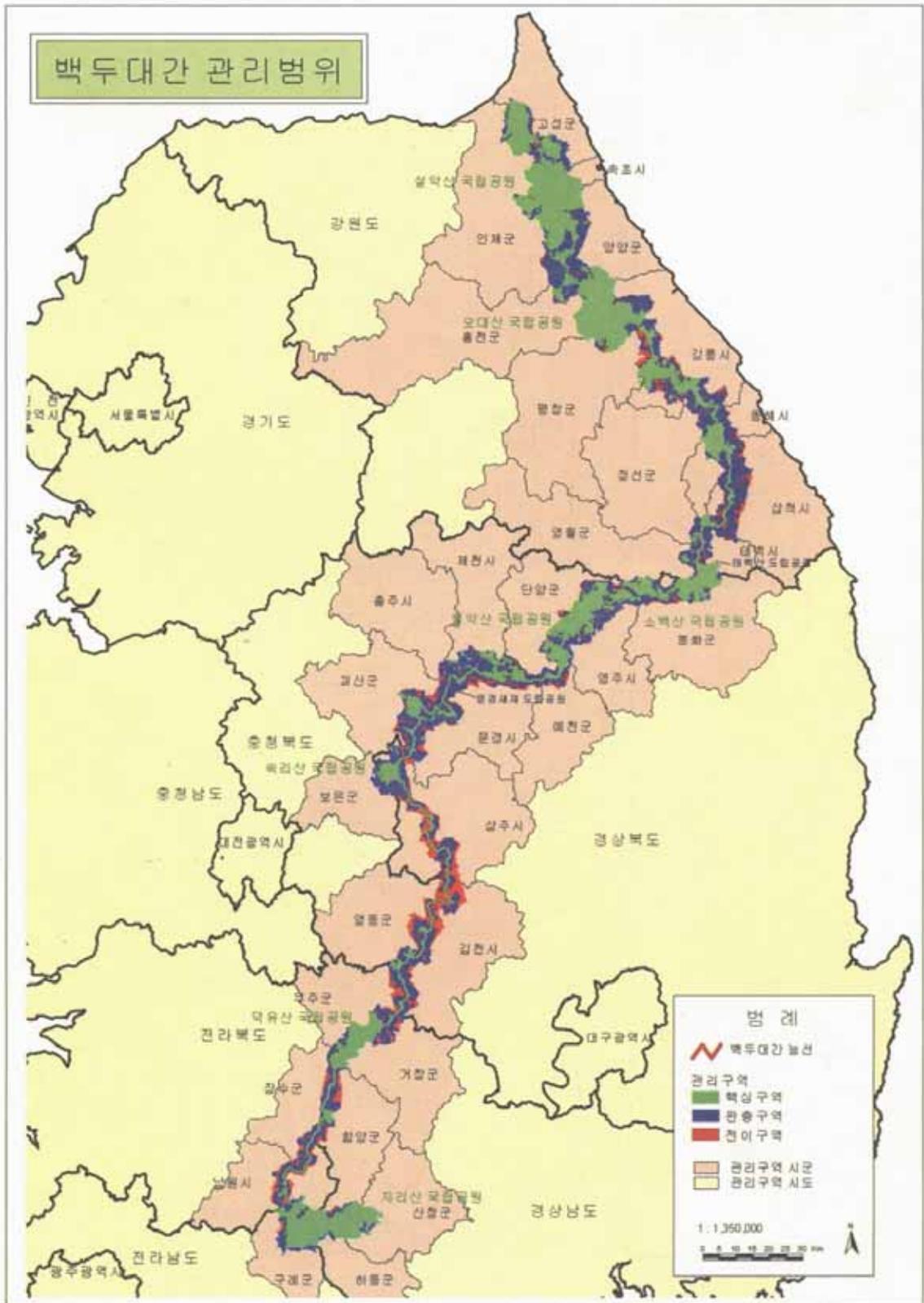
○ 위원회 구성

1. 인원구성 : 23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포함)
2. 위원자격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 위 원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벌칙 (법률 제15조)

- 핵심구역 안에서 행위위반 자 :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완충구역 안에서 행위위반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바. 녹지자연도

현존식생의 생태, 식생의 종류, 생육상태, 토지이용현황 등 인간의 간섭정도의 따라 <0>에서 <10>까지의 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존자연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표현함과 동시에 도시의 개발 등에 따라 자연파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의 지표

□ 녹지자연도 사정 기준

녹 지 자연도	개 요	해당식생형
0	수 역	수역 (저수지,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하중도와 하안포함)
1	시가지, 조성지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2	농경지(논, 밭)	논, 밭, 텃밭 등의 경작지 비교적 녹지가 많은 주택지도 포함 (녹피율 60%이상)
3	농경지(과수원)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4	이차초원 (키가 낮은 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군락
5	이차초원 (키가 높은 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높은 초원군락
6	조림지	인위적으로 조림된 삼림
7	이차림(I)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지속적인 인간 간섭하에 놓인 삼림
8	이차림(II)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
9	자연림	성숙된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10	자연초원, 자연나지 (자연초지, 습원, 고산황원 등)	삼림식생 이외의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

사. 식생보전등급

국토의 식생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지의 자연조건, 식생천이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식생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성 · 희귀성가치에 따라 I~V까지 등급화한 보전수준



□ 식생보존등급 사정 기준

등급	수직 식생대	상 관	녹지 자연도	주요 식생유형
V	고산대	고산대관목림/ 고산대초원	10	고산히이드, 풍충초원, 눈밭식생, 자연초원, 암극식생
	아고산대	아고산대초원	10	자연초원
	산지대	산지대초원	10	자연초원, 풍충초원, 고경초원
	구릉대-산지대	암벽식생	10	암벽의 식생군락
	각 식생대 공통	습원	10	저층습원, 중간습원, 고층습원
	"	습지식생	10	자연습지지역의 식생군락
	"	수생식물군락	10	부엽·침수식물군락, 달뿌리풀군락, 물억새군락 등
	"	염소지식생	10	거머리말군락, 통통마디-지채군락, 해홍나물-갯질경군락 등
	"	사구식생	10	해당화군락, 갯마늘-통보리사초군락, 갯금불초군락 등
	"	석회암지식생	10	회양목군락, 측백나무군락 등
	"	해안초본식생	10	해안변의 초본식생군락
	"	해안단애식생	10	해안절벽의 식생군락
	"	자연나지	10	자연적으로 형성된 나지
IV	고산대	고산대관목림	9	들쭉나무군락, 월굴-눈잣나무군집
	아고산대	아고산 침엽수림	9	분비나무-가문비나무군목/분비나무-가문비나무군단, 구상나무군단 소속의 군집 및 군락
	"	아고산하록활 엽수림	9	사스레나무군락/자작나무군락
	"	아고산하록 활엽수이차림	9	사스레나무군락 등
	산지대	산지하록 활엽수림	9	당단풍-신갈나무군목/생강나무군단 소속의 군집 및 군락
	"	산지침엽수림	9	진나무군락, 소나무군락 등
	"	산지계곡림	9	느티나무군락 등
	"	산지습성림	9	느릅나무군락, 들메나무군락, 물푸레나무군락 등
	"	산지하천변림	9	개키버들군락 등
	"	산지풍충암각지 관목림	9	설악눈주목군락, 흰참꽃군락 등
	"	산지하록 활엽수이차림	9	신갈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
	산지대	하록활엽수림	8	신갈나무군락 등
	구릉대-산지대	상록침엽수림	8	소나무군락, 곰솔군락 등
구릉대	상록활엽수 이차림	8	구실잣밤나무 및 정가시나무맹아림/약령림	



등급	수직 식생대	상 관	녹 지 자연도	주요 식생유형
Ⅲ	구릉대-산지대	하록활엽수 이차림	7	신갈나무군락, 서어나무-개서어나무, 자작나무, 줄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군락 등
	구릉대-산지대	상록침엽수 이차림	7	소나무군락, 곰솔군락 등
	산지대	산지선구성 관목림	7	붉은병꽃나무군락 등
	구릉대	대나무림	7	죽순대군락, 왕대군락 등
	산지대-아고산대	이차초원	5	역새초원 등
Ⅱ	각 식생대 공통	하록활엽수림 상록침엽수림	7	굴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갈참나무군락, 소나무군락 등
	"	상록침엽수조림	6	소나무, 곰솔, 편백, 측백, 삼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구상나무조림 등
	"	낙엽침엽수조림	6	일본잎갈나무조림 등
	"	상록활엽수조림	6	녹나무조림 등
	"	낙엽활엽수조림	6	상수리나무, 밤나무조림 등
Ⅰ	구릉대	조릿대초원, 군락	5	조릿대류군락
	구릉대	임연성관목-덩굴군락	5	산과 마을 등 경계지역의 관목-덩굴군락
	구릉대	이차초원	5	역새초원
	구릉대	이차관목림	5	교란지역에서 관목림군락
	각 식생대 공통	벌채지군락	4	벌채지에서의 식물군락
	"	휴경지 잡초군락	4	미경작지에서의 잡초군락
	"	이차초원	4	잔디초원, 왕포아풀군락
	"	길가잡초군락	4	침-환삼덩굴군락, 쑥군락
	"	휴경지	4	망초군락, 개망초군락 등
	"	목초지	4	목장이나 목초 재배지
	"	과수원	3	사과나무, 배나무 등의 각종 과수원
	"	농경지	2	논, 밭 등의 경작지



아.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97~'03)를 활용하여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의거 전국토를 생태적가치에 따라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1/25,000 지형도에 표시한 것으로, 녹지자연도에 야생 동 · 식물서식, 지형경관 등 고려하여 작성

□ 생태 · 자연도 등급의 평가기준

제2장 생태 · 자연도 등급 평가 기준 등

환경부예규246호(2004. 10. 19)

제13조(생태 · 자연도 1등급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 · 자연도 1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식 생

가. 식생보전 IV등급이상 지역

나. 식생 조사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자연식생으로 임상도 4영급이상 지역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등

가. 포유류의 경우

(1) 멸종위기 I 급 종인 포유류가 식생보전 2등급, 임상도 2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6 등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 때에 생태 · 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된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 II 급 종인 포유류가 식생보전 3등급, 임상도 3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 때에 생태 · 자연도 등급은 서식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나. 조류의 경우

(1) 멸종위기 I 급 종인 조류가 식생보전 2등급, 임상도 2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 때에 생태 · 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 II 급 종인 조류가 식생보전 3등급, 임상도 3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 때에 생태 · 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 양서 · 파충류의 경우

(1) 멸종위기 I 급 종인 양서 · 파충류가 식생보전 3등급, 임상도 3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 때에 생태 · 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 II 급 종인 양서 · 파충류 2개종 이상이 식생보전 3등급, 임상도 3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 때에 생태 · 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라. 곤충의 경우

- (1) 멸종위기 I 급 종인 곤충이 식생보전 3등급, 임상도 3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 때에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 한다.
- (2) 물새 20,000마리이상 또는 물새 한 종의 개체수의 1%이상이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하천의 경우 도래지 경계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및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단,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 2등급, 임상도 2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한 한다)
- (3) 경제적·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산란장인 하천의 경우 이동통로 및 산란장의 경계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및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단,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 2등급, 임상도 2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한 한다)

나. 습지 (호소·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 (1) 멸종위기야생동물 2종 이상의 산란장 또는 생육장으로 중요한 습지
-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급 종이 3종 이상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I급 종이 6종 이상 서식하는 습지
- (3) 물새 20,000마리이상 또는 물새 한 종의 개체수의 1%이상이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습지
- (4) 어류가 20종 이상 서식하는 습지 (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
- (5) 별표 5의 자연 하천습지
- (6) 산지습지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종이 1종 이상 또는 II급 종이 2종 이상이 서식하는 산지습지

4. 자연경관 : 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에 의하여 지형경관 등급이 V등급인 지역

제14조(생태·자연도 2등급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식 생

- 가. 식생보전 II등급이상 III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지역
- 나. 자연식생으로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
- 다. 녹지자연도 6등급이상 7등급이하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가. 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의 경우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녹지자연도 5등급 이상 지역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이 1개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 나. 식물의 경우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멸종위기야생식물이 1개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 철새도래지 등

- (1) 철새 1,000~10,000 마리가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농경지 및 산림지역을 포함한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제13조 제2호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경지로서 철새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지역

3. 습지

가. 하천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1종 서식하는 하천으로서 서식지 경계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및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단,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 2등급, 임상도 2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한 한다)

(2) 물새 5,000~20,000 마리가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하천으로서 도래지 경계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및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단,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 2등급, 임상도 2영급 또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한 한다)

나. 습지 (호소·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2~5종 서식하는 습지

(2) 물새 5,000~20,000 마리가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습지

(3) 어류가 11~19종 서식하는 습지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1종 서식하는 산지습지

제15조(생태·자연도 3등급의 기준) 생태·자연도 1등급 및 2등급 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6조(별도관리지역의 생태·자연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관리지역에 대하여도 본 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 제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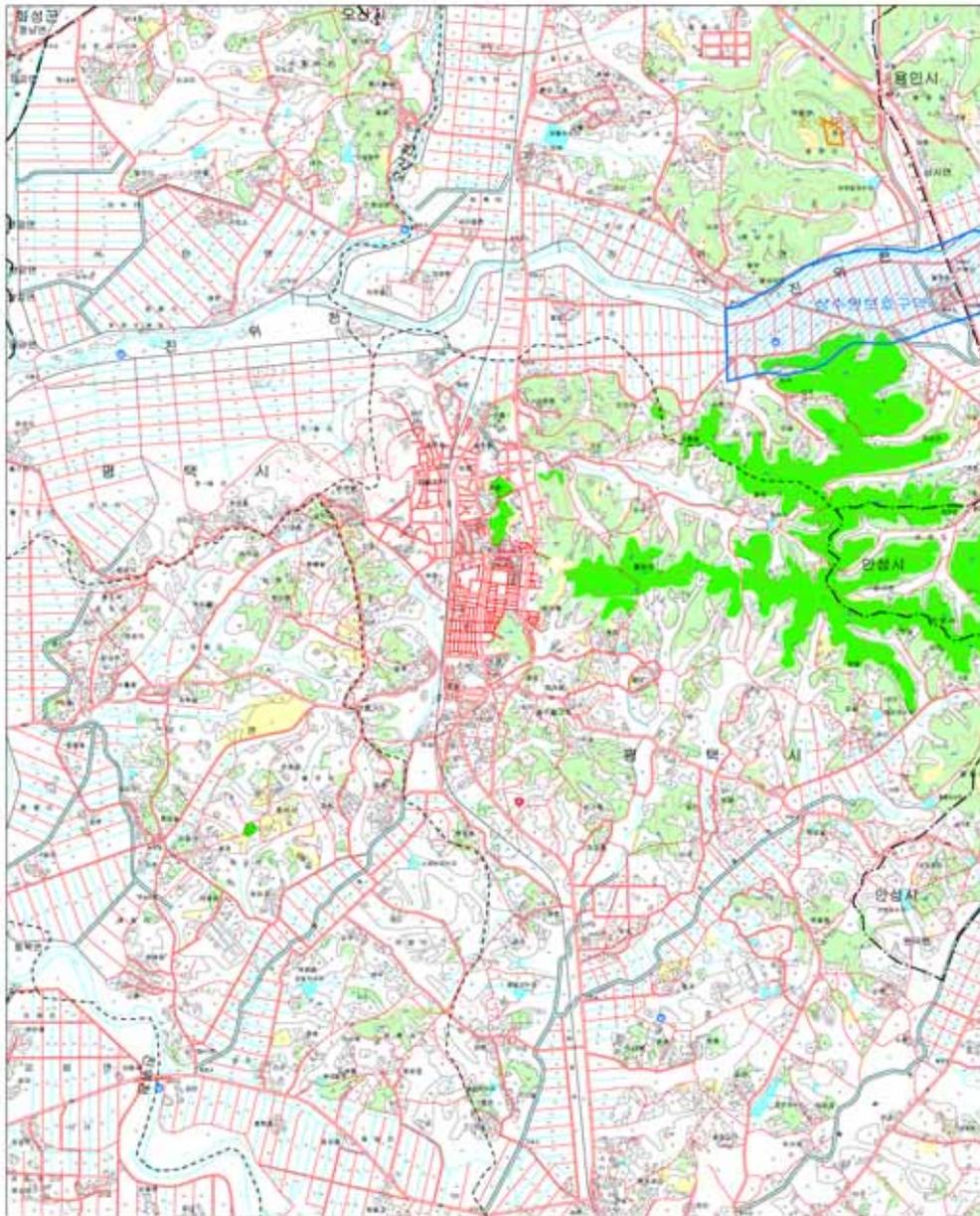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련된 조문은 있지 않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에 사업에 대한 협의시 1등급 권역의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기준을 고려토록 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규정에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등급별로 행위제한에 대하여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1-7호),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2004. 3) 등에 의거 국토이용변경 협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행정 및 개발사업 계획의 협의시 생태자연도를 주요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협의 정도는 사업의 유형이나 특성 및 지역 등에 따라 차이발생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포함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가운데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당해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규정



서 정

1:25,000 국토환경지도(자연환경현황도)

도면번호 : 377133 (N452-09-26-3)



권역 : 영서권 지역개발협력추진사업(영서유역) : 1998년 12월
 발행 : 2008년 7월

축척 1:25,000

환경부 인공관개장터·행기연구원

생태자연도

- 1 특급
- 2 특급
- 3 특급(산림지역)
- 4 특급(기타지역)

별도관리지역

- 대리특정림
- 우물특정림
- 생태계보전지역
- 조류보호구역
- 습지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자연유산(국립자연유산)
- 대리자연유산(국립자연유산)
- 국립공원
- 국립공원
- 국립공원
- 특별도서

지명도판

지명	지명	지명	지명	지명	지명
영성군	영천시	영주시	안성시	영서유역	대리특정림
영서유역	대리특정림	우물특정림	생태계보전지역	조류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유산(국립자연유산)	대리자연유산(국립자연유산)	국립공원	국립공원	국립공원
특별도서					



«일련주기»

1. 본 지도는 영서유역(1:25,000)의 자연환경현황도를 제작함
2. 본 지도는 영서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를 제작함
3. 본 지도는 영서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를 제작함
4. 본 지도는 영서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를 제작함
5. 본 지도는 영서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를 제작함





3. 환경기준

(1) 대기

항목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 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평균치 0.02ppm이하 ○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간평균치 9ppm이하 ○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평균치 70$\mu\text{g}/\text{m}^3$이하 ○ 24시간평균치 150$\mu\text{g}/\text{m}^3$이하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Method)
오존 (O 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평균치 0.5$\mu\text{g}/\text{m}^3$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天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음 (단위 : Leq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5
도로변지역	“가”및“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가. “가”지역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



-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나”지역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생산관리지역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3) 수질

가. 하천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ℓ)	부유물질량 (SS) (mg/ℓ)	용존산소량 (DO) (mg/ℓ)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I	상수원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II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III	상수원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IV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V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것	2이상	-

구분	등급	기준
사람의 건강 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mg/ℓ 이하, 비소(As) : 0.05mg/ℓ 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mg/ℓ 이하, 6가크롬(Cr6+) : 0.05mg/ℓ 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mg/ℓ 이하

※비고

1. 수산용수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나. 호소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 군수/ 100m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I	상수원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하
II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이하
III	상수원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이하
IV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이하	1.0이하
V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것	2이상	-	0.150이하	1.5이하

구분	등급	기준
사람의 건강 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mg/l 이하, 비소(As) : 0.05mg/l 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포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mg/l 이하, 6가크롬(Cr6+) : 0.05mg/l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mg/l 이하

※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역

① 생활환경

등급	기준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용존산소량 (DO) (mg/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 군수/100mL)	용매추출 유분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I	7.8-8.3	1이하	7.5이상	1000이하	1.01이하	0.03이하	0.03이하
II	6.5-8.5	2이하	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6이하	0.05이하
III	6.5-8.5	4이하	2이상			1.0이하	0.09이하

②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mg/L)
전수역	6가크롬(Cr 6)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0.0005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말라티온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0.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비고

- 1. 등급 I 은 참돔 · 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 ·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승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 · 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 · 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4) 토양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단위 : mg/kg)

오염물질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카드뮴	1.5	12	4	30
구리	50	200	125	500
비소	6	20	15	50
수은	4	16	10	40
납	100	400	300	1,000
6가크롬	4	12	10	30
아연	300	800	700	2,000
니켈	40	160	100	400
불소	4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30	-	-
PCB	-	12	-	30
시안	2	120	5	300
페놀	4	20	10	50
유류성분(동 · 식물제외)	-	80	-	200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	2,000	-	5,000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8	40	20	1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4	24	10	6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비교

1. “가”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 · 밭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학교용지 · 하천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수목 · 잔디 식생지에 한함) · 유원지 · 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 도로 · 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우려(대책)기준을 적용
 -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비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2항



4. 용어의 해설

- 1) 부정합 : 지층이 퇴적되었다가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되거나 퇴적면이 융화되어 침식을 받았을 때의 상 · 하지층 사이의 관계
- 2) 단층 : 지각 변동으로 생긴 지각의 틈을 따라 지층이 아래위로 어그러져 층을 이룬 현상, 또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서로 어그러진 지층
- 3) 절리 : 암반이 내력이나 외력에 의하여 갈라진 규칙적인 결
- 4) 편리 : 슬레이트, 편암과 변성암이 재결정화 되면서 나타나는 선구조
- 5) 생태계 : 생물의 군집(식물군집과 동물군집) 및 그것을 둘러싼 자연계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요소의 총합적인 물질계
- 6) 식생(Vegetation) : 어느 일정한 공간에 모여 사는 식물의 전체를 말하며 식물공동체라고도 표현한다. 식생은 어떤 크기나 단위를 한정하거나 또는 식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 나있는 식물의 집단을 가리킨다.
- 7) 식물상(Flora) : 식물의 목록(어느 지역의 소산식물)
- 8) 군집 : 어느 서식처에서 유기적으로 집합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모든 생물 개체군
- 9) 군락 : 동일한 환경에 적응해서 생활하는 식물 집단
- 10) 피도 : 식물군락에 있어 각 종류의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
- 11) 현존식생도 : 현존식생의 분석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현존식생은 장래의 자연군락과 잔존한 자연군락의 구체적인 분포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
- 12) 녹지자연도 : 현존식생의 생태, 식생의 종류, 생육상태, 토지이용현황 등 인간의 간섭정도의 따라 <0>에서 <10>까지의 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존자연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표현함과 동시에 도시의 개발 등에 따라 자연파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의 지표
- 13) 식생보전등급 : 국토의 식생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지의 자연조건, 식생천이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식생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성 · 희귀성가치에 따라 I~V까지 등급화한 보전수준
- 14) 생태자연도 :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97~'03)를 활용하여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의거 전국토를 생태적가치에 따라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1/25,000지형도에 표시한 것으로, 녹지자연도에 야생 동 · 식물서식, 지형경관 등 고려하여 작성
- 15) 식피(Coverage) : 지면을 덮고 있는 식물의 정도(%)
- 16) 종다양성지수 : 주어진 지역에서 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 지수
- 17) 귀하식물 : 인간의 매개에 의하여 자생지로부터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식물(토끼풀, 코스모스, 아카시아 등)
- 18) 균등도 지수 : 종의 상대적인 풍부성과 우점도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
- 19) 아황산가수(SO₂) : 황산화물의 하나로 이산화황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환경기준물질



- 로 무색의 자극성이 강한 기체이며 액화하기 쉽다. 중유나 석탄 등을 연료로 하는 매연 속에 들어 있으며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로 일반생물에 대해 유독하여 대기오염의 지표로 이용된다.
- 20) 이산화질소(NO₂) : 아질산가스라고도 하며 특이한 자극취를 가진 적갈색의 기체로 일산화질소에 산소가 섞이면 생성되는 적갈색의 자극성 기체로 물과 반응하여 HNO₂와 HNO₃를 만들며, 자동차의 가속과 고온연소시 다량 생성된다. 유독하고 산화작용이 강해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되어 있다.
 - 21) 일산화탄소(CO) : 무색 · 무취의 매우 유해한 기체로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계통을 침범하거나 빈혈증을 일으킨다.
 - 22)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
 - 23) 오존(O₃) : 산소의 동소체로 상온에서는 특유의 악취를 내는 기체로 산화력이 강해 약 0.25ppm 이상에서 호흡기를 파괴하고 5~10ppm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대기중의 이산화질소에 자외선이 닿으면 원자상의 산소(O)를 발생해 대기중의 산소(O₂)와 결합하여 오존이 된다.
 - 24) 확산 : 일정공간내에 기체나 액체의 농도분포가 같지 않을 때 기체나 액체의 분자가 행하고 있는 열운동 때문에 농도차가 높은 농도로부터 낮은 농도로 시간에 따라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 25) 대기안정도 : 대지에 가까운 기층에 있어서 대기의 기온이 상층은 낮고 하층이 높을 때는 기류는 상승하여 대기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며, 대지의 냉각 등에 의해 상층이 높고 하층이 낮을 때는 역전층을 일으켜서 기류는 정지상태로 되며 대기는 안정적이다. 이 대기의 안정도를 말하며, 연기나 배기가스 등 공기오염물의 확산상태에 영향을 주며, 불안정할 때는 상방으로 확산되어 대기는 정화되지만, 안정된 때에는 하방으로 정체되므로 지표면은 오염된다.
 - 26) 용존산소(DO) :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분자상의 산소(용존산소)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공기속의 산소에 의해 공급되는 수중에 용해되는 양의 온도, 기압 등에 따라 달라진다.
 - 27)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 오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통상 20℃에서 5일간)을 ppm 또는 mg/l 로 표시한 것으로 수중의 용존산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하천이나 하수, 공장폐수 등의 오염농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 2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오수중의 유기물이 화학적으로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100℃에서 30분간)을 ppm 또는 mg/l 로 표시한 것이다.
 - 29) 부유물질(SS) : 물속에 떠 있는 2mm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포함한 고형물의 총칭으로서 현탁물질이라 하여 통상 ppm으로 나타낸다.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해수나 담수와 비슷하여 용해되지 않는 비용해성 물질을 말한다.
 - 30) 부영양화 : 호소 등의 수역에 있어서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류 증가로 인해 조류가 과



다 번식함으로써 수중의 용존산소가 고갈되고 유기퇴적물의 양이 증가하는 등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 31) 슬러지 : 정수 및 폐수처리과정에서 수중의 부유물이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형성되는 물질
- 32) 강우강도 : 단위시간당 강우량을 강우강도라 부르며, 1시간당 강우량(mm/h)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3) 경도 : 물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을 탄산칼슘이 ppm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수치로서, 전경도, 일시경도, 영구경도 등의 구분이 있다.
- 34) KMnO₄ 소비량 : 주로 유기물에 의해서 소비되는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말하며, 이 값으로부터 산소소비량(COD)를 구하고, 물속의 유기물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35)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에 의해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즉 종말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지역면적을 주로 해서 말하면 배수면적과 같다.
- 36) 색도 : 물의 색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색도표준액 1ml를 물로서 1ℓ로 할 경우에 띄는 색을 1도로 한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수의 색도는 5도 이하로 하고 있다.
- 37) 수면적 부하 : 침전지 등에서 처리수의 단위면적당 흐르는 단위시간당 수량을 표시하며, 단위는 일반적으로 $m^3/m^2 \cdot hr$ 또는 $m^3/m^2 \cdot day$ 를 쓴다. 침전작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은 계획오수량에 대하여 $25 \sim 50 m^3/m^2 \cdot day$, 최종침전지에서 $20 \sim 50 m^3/m^2 \cdot day$ 정도를 취하여 침전지의 수면적을 구한다.
- 38) 유입시간 : 지상에서 떨어진 빗물이 지표면을 흘러 빗물받이에 유입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경사면의 유무라든지 가옥의 밀집도, 지질, 도로의 포장율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보통은 5~1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 강우의 강도가 강할수록 유입시간은 단축된다.
- 39) 유출계수 : 강우량이 일부는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투하고 나머지가 관로내로 흘러들어 간다. 이 경우의 관내로 흘러 들어가는 단위시간의 최대빗물량과 전강우량과의 비를 말하며, 빗물유하계수라고도 한다.
- 40) 우수유출량 : 하수관에 유입하는 강우량을 말하며, 강우의 강약, 배수면적, 지표의 상태 등에 따라 변하고, 그 일부는 지중에 침투하거나 증발하여 강우전체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 41) 탁도 : 불순물에 의해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제카오링 1mg을 물 1ℓ 중에 포함시킬 경우의 흐림을 1도(또는 ppm)로 한다. 수도수의 탁도는 2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42) dB(decibel) : 소음 및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 43) dB(A) : 소음도의 단위로 사람의 청감특성에 가깝도록 보정한 것
- 44) 등가소음도(Leq) : 변동이 심한 소음의 평가방법으로 소음의 에너지를 시간적으로 평균하여 나타내는 단위
- 45) dB(V) : 수직진동을 나타내는 단위.



- 46) 토양 : 암석의 풍화 산물과 이에 분해 · 부패된 유기물이 섞여지고 기후 · 생물등의 작용을 받아 변화되며, 그 변화는 환경조건과 평형을 이 후기 위해 항상 계속되고 알맞은 양의 공기와 물이 들어 있을 때에는 기계적으로 식물을 지지하고 양분의 일부를 공급하여 식물을 길러주는 곳이다.
- 47) 토양학 : 토양을 동적 자연체로 보아 토양의 기원 · 생성 · 조성 · 성질 · 변화 발달 · 응용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으며, 기초 토양학(pedology)과 응용토양학(edaphology)으로 나눌수 있다.
- 48) 폐기물 :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49)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
- 50)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51)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52)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 검시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53) 처리 : 폐기물이 소각 · 중화 · 파쇄 ·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와 매립 ·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 54)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55)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56)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57)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물질 :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58) 가스 : 물질의 연소 · 합성 · 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 59) 입자상물질 : 물질의 파쇄 · 선별 · 퇴적 ·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 합성 ·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60) 먼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 61) 매연 :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 62)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수 없는 물
- 63)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64) 호소 :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안의 물과 토지
 - 65) 야생조수 :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짐승(수입된 것을 포함한다)중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66) 습지 :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 67) 하천 :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
 - 68) 지하수 :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 69)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